

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위원회
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7 월 11 일

여수시장 2021명



여수시 조례 제1895호

붙임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895호

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단서 중 “11명”을 “11명 이내로 하고, 윤리특별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다.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·③(생략)</p> <p>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<u>11명</u> 이내로 한다.</p> <p>⑤·⑥(생략)</p>	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·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11명</u> 이내로 하고, <u>윤리특별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</u> <u>다.</u> -----.</p> <p>⑤·⑥(현행과 같음)</p>

개정조례전문

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여수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: 9인
2. 기획행정위원회 : 8인
3. 환경복지위원회 : 8인
4. 해양도시건설위원회 : 9인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제3호라목의 경우 행정사무감사, 예산안 심사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업무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한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.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의회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
2. 기획행정위원회
 - 가.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나.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- 다.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마.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바. 문화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아.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3. 환경복지위원회

- 가. 교육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환경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4. 해양도시건설위원회

- 가. 수산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시설관리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상임위원”이라 한다)이 된다. 다만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·부의장의 임기와 같다. 또한 상임위원 선임일이 의장 선거일보다 늦은 경우의 상임위원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.

② 보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으로 한다.

제6조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 1인을 둔다.

②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
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. 다만,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.

⑥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하나의 안건이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 되거나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의회는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, 윤리특별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다.

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, 다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되 6개월의 범

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.

⑥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장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선임한다.

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3인, 환경복지위원회 3인, 해양도시건설위원회 3인을 추천하여 선임하되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우선하여 선임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 유고시 회의진행을 위해 출석위원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부위원장)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제12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에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의 방법을 준용한다.

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결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